



수입거래약정서

년 월 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귀중

인

수입자 :

인

주 소 :

인감
대조

당사는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과 수입거래약정서에 따른 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수입거래약정서'가 적용됨을 승인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수입거래 기본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함.

인

위 수입자(이하 "수입자"라 함)와 위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은 제 1 조 각호에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다음 각호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화환신용장에 의한 수입거래
2.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거래
3. 무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
4. 전 각호에 따른 무어음 거래
5.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거래

제 2조 신용장의 발행, 통지 및 환거래은행 등의 선정

- ① 은행은 수입자가 제출하는 신용장발행 신청서(조건변경신청서 포함) 등의 기재사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재발행으로 포함), 통지한다. 다만 은행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수입자가 환거래은행 등(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확인은행, 상환은행, 기타 관련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음)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은행이 선정하기로 하며 수입자가 환거래은행 등을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통지후 은행은 환거래은행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은행은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통상어, SWIFT 부호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신, 통신과정 또는 착신 후 발생하는 멸실, 분실, 훼손, 지연, 오류, 누락, 기타 번역, 해석상의 오류 등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수입자가 부담한다.

제 3 조 담보

- ① 수입자는 선적서류(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및 기타 신용장 또는 수입계약서에 의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 및 수입화물(선적서류에 표시된 화물을 말한다. 이하 같음)을 수입환어음(수입화물대금, 기타 대금지급에 관한 환어음, 청구서 또는 이들과 동종의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선적서류의 원금 또는 이의 결제를 위한 대출금 및 이들에 부수하는 이자, 수입과 관련한 비용, 지연배상금, 기타 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다. 수입화물 대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입화물이 멸실, 훼손, 변질, 분실, 감가등으로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신용이 악화된 경우, 수입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하기로 한다.
- ③ 은행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수입자의 은행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수입자가 결제자금의 지급, 개설보증금의 납입, 선취보증신청에 따른 보증금의 적립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은행에 원화를 납입하는 경우, 그러한 납입 등은 이 약정서상의 지급이 되지 아니하고, 당해 원화가 관련 수입환어음에 의한 지급일의 도래시 은행에 의하여 적절한 외국통화로 환전될 때까지 지급에 대한 담보가 되며, 은행은 선택에 따라 수입자의 은행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와 상계하거나 그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제 4 조 수입화물의 대도

- ①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을 대도받는 경우 이 대도 화물을 입고, 운반, 출고, 가공, 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은행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 ② 수입자는 대도화물을 매도할 경우 금액, 화물의 인도, 대금의 영수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은행의 동의를 받는다.
- ③ 대도화물의 매도대금은 영수 후 곧 은행에 지급한다. 매도대금을 어음, 기타 유가증권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곧 은행에 양도한다.

제 5 조 보험금

- ①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은 수입화물에 대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입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곧 제출한다.
- ② 은행이 제1항의 보험금을 제3조 제1항의 채무 및 이자 등의 변제에 충당한 후에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입자가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3]조에 준하여 수입자의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 6 조 수입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 지급, 인수 등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입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 지급, 인수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환거래은행 등의 소재지의 법령, 협약, 상관습이 다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에도 불구하고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한 사실을 곧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제 7 조 은행의 면책

- ①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은 신용장조건에 따른 수입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 지급, 인수 등을 함에 있어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모든 서류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은 서류에 관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선적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변조 또는 법적효력
 - 2) 선적서류상에 표시되어 있는 화물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격 또는 실제여부
 - 3) 화물의 매도인, 송하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하인, 보험자, 기타 관련자의 성실성, 작위 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이행능력 및 신용상태 등
- ② 은행이 수입신용장 조건 불일치에 관한 조회요청서, 수입자의 회보가 은행과 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기간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수입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 지급, 인수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과 책임은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자가 부담한다.
- ③ 수입자가 이 약정서와 관련한 신청을 하면서 은행에 고지한 내용(이중대출 여부 및 중계무역 해당여부 포함)이 사실과 달랐거나 다르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수입자는 이를 보상하고 은행을 면책한다.

제 8 조 상환채무의 부담과 수입환어음 등의 결제

- ① 수입자는, 은행이 신용장조건에 따라 지급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이행을 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상환채무를 부담하며 수입자, 은행 및 환거래은행 등 앞으로 발행되는 수입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에 대하여 그 대금을 해당 외화 또는 은행이 고시한 결제일의 해당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제9조에 정한 결제일에 결제한다. 미합중국 통화 이외의 통화로 결제하는 때에는 2 영업일 전에 미리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수입자 또는 수입신용장에 정한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화물선취보증(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배서 포함)에 의한 인도 기타 인도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수입환어음 및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도 제1 항과 같다.
- ③ 수입자가 결제자금을 원화로 납입하는 경우, 수입환어음의 결제시기는 수입자의 납입일자에 불구하고 은행의 외화사정 등에 의하여 은행이 결제통화를 매입할 수 있는 날로 하며. 은행은 결제시기가 납입일자와 달라지는 경우 수입자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수입자는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① 지연이자와 ② 납입시와 수입환어음에의한 실제 외환 매입일간의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차를 전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금액을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원화 또는 기타 통화로 은행에 지급한다. 또한 이 약정서에 의하여 원화를 외국통화로 환전하는 경우 이에 적용되는 외국환 규정등의 제한으로 인해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은행은 그 손해를 수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신용장이 미합중국 통화 이외의 통화로 개설된 경우에도, 은행은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국제금융시장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수입환어음을 미합중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입자는 환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차를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한다.
- ⑤ 수입자가 신용장 조건이나 다른 방법으로 개설은행인 은행에게 선적서류 확인 전 수의자 등에 신용장에 따른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은행이 실제로 그에 따른 지급을 한 경우 (관련 신용장에 의하여 매입은행이 자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거나 권한을 준 경우를 포함), 수입자는 은행에 추후 제출되는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은행에 대하여 상환채무를 부담한다.
- ⑥ 기한부신용장인 경우, 수입신용장의 수의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수입자는 은행이 수입신용장에 따른 상환청구의 할인된 금액을 수의자 앞 지급한 경우에도, 만기일에 상환청구 전액을 은행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 수입신용장 또는 은행과의 기타 계약에 따라 수입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수입자는 만기일 또는 은행이 요청한 날짜에, 상환청구 전액과 지급일(당일 포함)에서 만기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상환 청구 금액에 대하여 산출된 이자를 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 ⑦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조기상환수수료에서 정부 또는 기타 세무 당국이 부과하는 세금(부가가치세, 판매세, 원천징수세 등), 부과금, 관세, 수수료, 평가료 등(이자, 과태료, 이에 대한 추가금을 포함)이 공제 또는 징수되거나 이에 대한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신용장을 인수함으로써, 수입자는 수입자가 해당 세무 당국에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은행에 부과된 수수료 및 이자 그리고 세금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은행이 요청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본 조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 9 조 결제일

수입자는 제8조에 의하여 상환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대금의 결제조건이 일람출급인 경우에는 수입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차기통지서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에는 그 차기통지서) 도착 후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 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및/또는 신용장 대금상환 통일규칙(그 종 적용되는 바에 따름)이 정한 기일 이내에 기한부 출금인 경우에는 만기일에 결제한다.

제 10 조 선취보증신청에 따른 보증금 적립

수입자는 선적서류의 도착전에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의 발급(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배서인도 포함)을 신청할 때에는 외국환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거나 은행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은행이 청구하는 경우 은행이 고시한 실제 입금일의 해당 환율로 환산한 대금 또는 해

당외화대금을 보증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수입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결제시 환율변동 등으로 등 보증금이 결제자금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금을 곧 추가 입금한다. 다만, 은행은 결제 후 잔액이 있는 경우 수입자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입자에게 반환한다.

제 11 조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

- ① 수입자는 신용장의 취소 또는 조건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신용장을 취소 또는 조건변경 한 경우 그 취소 또는 조건변경은 당사자(개설은행, 수의자, 확인신용장의 경우는 확인은행)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있다.
- ② 은행이 신용장 전액 또는 미사용 잔액을 취소할 경우 수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2 조 사전 상환청구 등

- ① 수입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1항(당연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신용장의 잔액(신용장에 따른 수입환어음 발행 허용 한도액) 및 제15조에서 정한 이자 등에 대하여 은행에 대하여 사전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곧 이를 신용장의 통화로 변제(또는 이행)하기로 한다.
- ② 수입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행의 청구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준하여 수입자는 은행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고,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하기로 한다. 수입자가 이중대출 여부 및 중계무역 해당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부담한 상환채무에 대하여도 제9조(결제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항에 따라 수입자는 곧 변제하기로 한다.
- ④ 수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조건에 따라 지체없이 지급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또한 수입자가 신용장의 통화와 다른 통화로 상환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은행은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입자로부터 이행을 받은 통화를 그대로 또는 그 통화를 신용장의 통화로 환전하여 보유할 수 있다.
- ⑤ 수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한 상환채무의 금액이 제8조에서 정한 바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상환 채무의 금액 및 제15조에서 정한 이자 등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입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한다. 다만,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되, 수입자가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3조에 준하여 수입자의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 13 조 사전상환청구 등의 환율

- ① 전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자가 상환채무를 원화 또는 은행의 승낙을 얻어 그 채무의 통화와 다른 외화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계산실행시에 있어서의 은행 소정의 환율을 적용한다.
- ② 전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이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그 지급채무의 통화와 수입자가 전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고 은행이 보유하는 통화가 다른 때에는 은행의 계산실행시에 있어서의 은행 소정의 환율을 적용한다.
- ③ 전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잉여금을 그 통화와 다른 통화로 수입자의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계산실행시에 있어서의 은행 소정의 환율을 적용한다.

제 14 조 위험부담 등

수입자는 화물운송인 또는 그 이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화물운송의 정지, 지연 또는 화물의 미도착, 연착, 멸실, 훼손, 변질, 품목의 상이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당해 화물에 관한 양류, 통관, 입고, 보관, 보험,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제 15 조 비용 등의 부담

- ③ 수입자는 제1호 각호의 거래에 따른 이자, 할인료, 지연배상금, 수수료, 우편료, 전신료, 기타 비용 및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의 권리행사, 권리보전,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과 손해를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수입자가 은행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 ④ 수입자 이외의 자가 제1항의 이자, 할인료, 수수료,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입자의 비용으로 은행이 수입자 이외의 부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입금되지 아니하여 수입자에게 청구한 때는 수입자가 이를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한기간내에 지급한다. 다만, 은행이 추후 수입자 이외의 부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환한다.
- ⑤ 제1항, 제2항의 이자, 할인료, 지연배상금, 수수료, 비용 등의 요율, 계산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 등은 은행이 정하여 고시하기로 한다. 단, 지급거절 등에 따른 법적비용, 대체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등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항목은 고시하지 않기로 한다.

제16조 제재(Sanctions)

① 진술

수입자는 다음의 내용을 진술하고 확인한다.

1. 수입자 · 수입자의 자회사 · 이들의 이사 등 임직원 · 대리인 · 계열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 통제하고 있는 개인 · 단체(개인, 단체를 포함하여 "법적 주체")가 아니다.

(1)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미국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연합, 영국 재무부, 홍콩 금융감독청 (HKMA)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치 또는 강제한 제재("제재")의 대상.

(2) 제재 대상 국가 또는 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배하는 영토(에서) 위치하거나, 조직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음.

2. 개별 신용장(이하 본 제재 관련 조항에서 청구보증서, 보증신용장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수입, 수출 또는 업무에 필요한 면허 · 허가를 취득하였고, 수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관할과 관련된, 또는 은행에 개설을 의뢰하는 신용장 및 선적 · 금융 등 신용장에 기재된 주요 사항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을 준수한다.

② 면제 및 면책

수입자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1. 은행 · HSBC Holdings plc · 그 계열사 · 자회사(이들을 포함하여 "HSBC 그룹"), HSBC 그룹의 서비스공급자는 제재 · 자금세탁 · 테러목적 자금조달 · 뇌물수수 · 부패 · 탈세 방지 등과 관련된 각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은행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또는 다른 그룹 구성원이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제재 등에 관련된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이하 "준법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다른 HSBC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다. 준법 조치는 지급 · 교신 · 지시의 확인 및 조사, 법적 주체가 제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제재를 따르지 않는 신용장 발행 · 지급 · 갱신 · 확장 · 이전 및 거래 · 지시의 이행 거부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은행 · 은행에 대한 서비스공급자 · HSBC 그룹 구성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취하는 준법 조치와 관련하여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손해 · 자연 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은행 또는 HSBC 그룹 구성원은 관련 준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수입자는 고의, 사실과 다른 진술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준법 조치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은행의 손실 · 비용 · 손해 · 제3자의 청구 · 조치 · 소송 · 책임(이들을 포함하여 "손실")에 대하여 은행을 면책하고 보상한다.

제 17 조 수입신용장 개설에 관한 특약

- ①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은 국제상업회의소 문서번호 600 (2007년도 개정)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에 따른다.
- ② 요구서류에 보험증권 또는 보증증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자는 은행에 개설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의 명의로 되어 있고 CFR금액에 최소한 10%를 추가한 금액에 해당하는 은행이 수락하는 보험증권이나 보증증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수입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은행은 수입자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은행은 신용장에 따른 서류에 은행이 행정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추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수입자는 신청서에 명시한 화물의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허가가 필요한 경우 유효한 수입허가서를 은행에 제시하기로 한다.
- ⑤ 환어음은 발행인이 요구하는 경우 "비소구 조건" 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
- ⑥ 은행은 신청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에서 수입자가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문구, 즉 "화물의 송장금액 전액에 대하여 앞으로 발행된 일람출금 일람후 _____ 일 정기출금의 환어음"이라는 문구를 포기/삭제하는 것이 적당하거나, 관례적이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은행의 재량으로 포기/삭제할 권한이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⑦ 신청서 기재의 "추가조건"에 명시적인 반대의 지시가 없는 경우, 은행은 은행의 재량으로 다른 은행이나 그 지점에 환어음 및 또는 기타 서류를 1회 또는 수회의 우편이나 기타 운송수단을 통하여 발송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⑧ 수입자는 해당 신용장에 따라 서류가 제시된 때에 은행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출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할 권한을 보유함을 인정한다.
- ⑨ 수입자는 UCP600의 제 34조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은행이 해당 신용장에 따라 지급/인수(결제) 또는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반대되는 증거가 없으면 그 선의 및 지급/인수(결제) 또는 매입 사실이 추정됨을 인정한다.
- ⑩ 수입자는 선하증권 또는 그에 의해 표창된 화물의 수하인으로서의 은행의 지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은행을 상대로 제기되거나, 은행이 처하거나 입게 되는 모든 소송, 절차, 청구, 손실, 손해 및 제비용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한 은행에 보상하기로 한다.
- ⑪ 은행은 수입신용장 조건 불일치에 관한 조회 요청시, 수입자의 회보가 2영업일 이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수입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 지급, 인수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발급에 대한 특약

- ①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이하 보증서)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청구, 요구, 책임, 손실, 손해 및 비용(정부기관이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부담금, 부과금 등을 포함함)과 외국환이체수수료, 환차손에 대해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은행에 보상하며,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고, 위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 및 책임에 대해 은행이 실제 이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하는 즉시 은행에 지급하도록 한다.

- ②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 상의 불일치 또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위에 기술된 선하증권과 기타의 선적서류를 인수한다. 위의 불일치와 결함으로 인해 수입자가 은행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 또는 청구를 포기한다.
- ③ 보증서 신청에 따라 수입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은행이 요구하는 금액("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한다. 담보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건을 적용하기로 약정한다.
 - 1) 보증서 신청에 따른 수입자의 채무가 보증서의 종료에 따라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는 담보금은 은행의 소유로 하고, 보증서 종료시 수입자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으면 담보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반환받기로 한다.
 - 2) 본 약정에도 불구하고 담보금은 부부 또는 신용장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자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며 은행은 담보금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본인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만약 이러한 충당의 결과 위 담보금이 정부당국 또는 은행의 규정 상 요구되는 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은 즉시 부족분을 추가 예치하도록 한다.
 - 3) 은행의 선택에 따라 담보금을 매입은행을 통해 수출자에 대한 또는 보증서에 따라 선박회사에 대한 지급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환전 당일의 실제환율에 따라 외국통화로 환전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으로 생기는 위험부담은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④ 보증서 신청서에 따른 수입자의 채무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수입자가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화물을 은행에 인도하기로 약정한다.
- ⑤ 수입자는 또한 은행이 선하증권 원본을 수령하는 즉시 이를 선박 회사에 직접 송부하거나 은행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⑥ 수입자는 보증서에 언급된 선적서류는 다른 은행, 회사 또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것임을 보장하고 또한 은행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고 합의한다.
- ⑦ 수입자가 은행과 체결한 수입거래약정서를 준수할 것이며, 동 약정하에서 발생하는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보증서 발급시 적립한 담보금을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 19 조 서류제출

수입자는 은행이 법령 등에 의한 상당한 사유로 이 약정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허가서, 추천서, 증명서, 신고서, 기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곧 제출 한다.

제 20 조 적용기간

이 약정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이나 수입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등 상호 가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해지 전 최소 30일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또한 해지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는 이 약정이 계속 적용된다.

제 21 조 언어

이 약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제 22 조 준용규정

수입자와 은행은 이 약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 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및/또는 신용장 대금상환 통일규칙(그 중 적용되는 바에 따름) 및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기업용)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위 통일규칙과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기업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위 통일규칙에 따르기로 한다.